

[별표 2]

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기준(제13조 관련)

구 분	세 부 내 용
1. 인센티브 지급규모 및 지급대상	<p>가. 인센티브 지급규모</p> <p>(1) 한국환경공단(주)의 장은 참여자가 보유한 적립 포인트를 1포인트당 1원으로 전환하여 지급</p> <p>(2) 잔여 포인트와 지급 포인트를 고려하여 연간 한도 7만 포인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가능하다.</p> <p>나. 인센티브 지급대상</p> <p>(1) 인센티브 지급시점에 잔여 탄소중립실천포인트가 1,000포인트 이상인 참여자.</p>
2. 인센티브 지급종류	<p>가. 참여자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음 사항 중에서 선택 가능</p> <p>(1) 현금</p> <p>(2) 신용카드 포인트</p> <p>(3) 참여기업 포인트</p>
3. 인센티브 지급횟수 및 지급시기	<p>가. 한국환경공단(주)의 장은 인센티브를 월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함</p> <p>(1) 익월 말일까지</p>